

전주대대 이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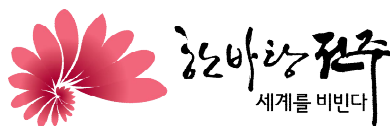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6.8

전주시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026. 8.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15
제3장	토지이용계획안	21
제4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25
제5장	대안의 설정	31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39
제7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51
제8장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	55
제9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61
제10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69
제11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재심의)	75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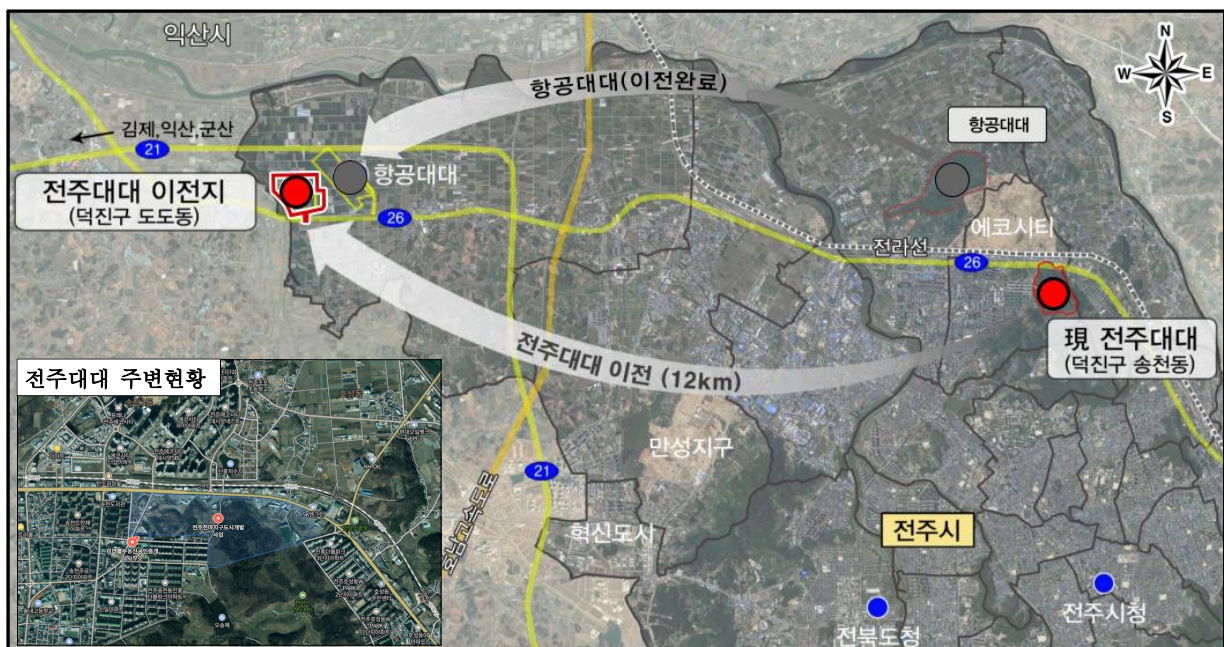
제1장 사업의 개요

-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3 추진경위 및 계획
- 1.4 사업의 내용
- 1.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재심의 사유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전주시 북부권 일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시가지 내 위치한 육군 전주대대의 이전 필요 요구
- 기 이전한 항공대대(준공승인 2019.04.15)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여 군부대 집약화에 따른 군 작전 수행능력 향상, 병영시설 현대화 도모
- 전주시 지역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도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방안을 발전시켜 지역의 환경 및 경제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전주대대 부지는 전주시에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2020.08.07)으로 지정되었고,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지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도 지연 중에 있는 실정임
- 또한, 상위관련계획인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2020.09, 전주시”에 전주대대 이전과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전주 도심지내 정주환경 여건의 조성과 군부대 집약화 및 병영시설 현대화의 도모를 추진하고자 함



(그림 1.1-1) 사업지구 이전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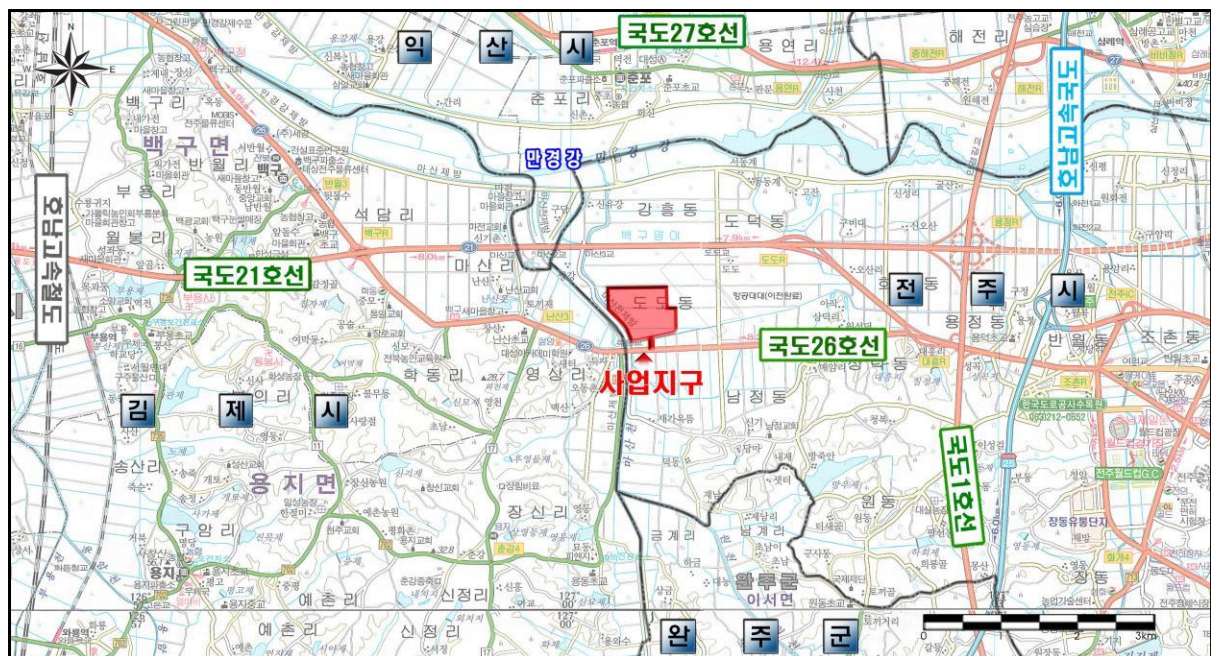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설치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호 가목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33만㎡ 이상인 것으로, 나목에서는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20만㎡ 이상인 것으로, 다목에서는 군사시설사업 중 20만㎡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본 사업의 면적은 31만㎡)
- 국방관계법령해석 질의응답집(국방부)에 따라 항공기지 안의 사업이 아닌 일반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라도 위 사업이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에 해당된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해석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 다목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시행

〈표 1.2-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해군기지의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비행장의 신설 2) 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건설 3)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 사업지구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 313,772.7㎡(사업지구 면적) ≥ 200,000㎡(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그림 1.2-1) 사업지구 위치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 방 시 설 본 부



수신 전주시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적용 관련 의견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련 법률 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

나. 국유재산법 제13조 기부채납 및 제55조 양여

다.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라. 전주시 도시개발과-4649('25.11.04.)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적용에 대한 협의 요청

3. 위 관련근거에 의거 「전주대대 이전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적용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귀 기관에서 추진 중인 「00사단 000연대 0대대(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사업면적 약 31.4만㎡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16.'가'호 적용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만, 인접지역의 소음과 농업진흥지역 등을 고려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방관계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32집)을 참고하여 16.'다'호를 적용하더라도, 군사시설(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끝 ·

(그림 1.2-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적용 근거

1.3 추진경위 및 계획

1.3.1 추진경위

- 2014.12.29 : 군사시설 이전 건의(전주시 → 국방부)
- 2015.03.11 :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군사시설 이전협의 진행 통보
- 2015.04.17 : 최초 합의각서(항공대대) 체결(전주시 ↔ 국방시설본부)
- 2019.08.21 : 전주대대 기본계획심의
- 2020.01.31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2020.05. :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김제/익산/완주)
- 2020.12.31 : 항공대대·전주대대 합의각서 분리 체결
- 2021.03.05 :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전주시)
- 2021.04.29 :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1.12.09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2.01.07~21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11.18 : 사업계획 변경 승인(국방부고시 제2024-31호)
- 2026.05.~06.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1.3.2 향후 추진계획(안)

- 2026.08.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예정)
- 2026.09.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공고·공람·설명회 개최 등 (예정)
- 2026.12.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예정)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전주대대 이전사업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
면 적	313,772.7㎡
사업기간	2019 ~ 2029년
주요 사업내용	병영시설, 훈련시설 등
실시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사업시행자	전주시
승인기관	국방부(국방시설본부)



주) 항공대대는 기 운영중으로 보안상 촬영불가

(그림 1.4.1-1) 사업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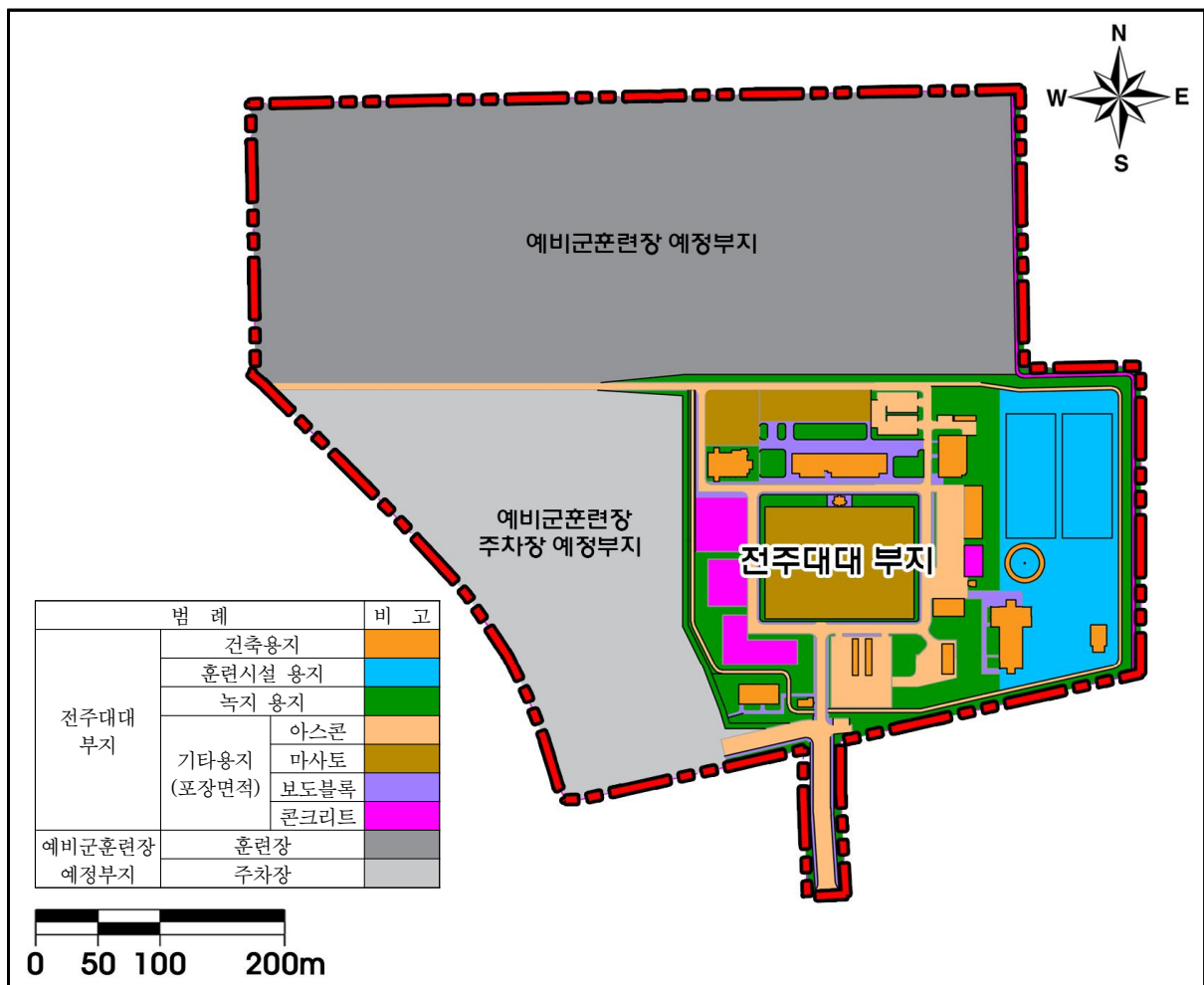
1.4.2 토지이용계획(안)

○ 본 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훈령에 따라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주대대 부대시설 조성 및 예비군훈련장 부지정지 후 국방부 기부 예정

-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 내 시설은 향후 국방부에서 별도로 수립 및 조성

〈표 1.4.2-1〉 토지이용계획표(안)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313,772.7	100.0	—
전주대대 부지	소 계	109,758.9	35.0	—
	건축용지	6,821.0	2.2	—
	훈련시설 용지	20,138.2	6.4	—
	녹지 용지	31,514.5	10.0	—
	기타용지(포장면적)	51,285.2	16.4	—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	소 계	204,013.8	65.0	—
	훈련장	139,396.9	44.4	—
	주차장	64,616.9	20.6	—



(그림 1.4.2-1) 토지이용계획도(안)

〈표 1.4.2-2〉 건축개요

구 분	개 요
사 업 명	육군 제35사단 106연대 2대대 이전사업
용 도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지 역, 지 구	농림지역
대 지 면 적	313,772.70㎡
건 축 면 적	6,821.02㎡ (2.17%)
연 면 적	9,227.69㎡ (2.85% / 지상연면적 8,927.15㎡)
규 모	건축물 33동, 공작물 19식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 차 대 수	65대
주 요 시 설	통합생활관, 병사/간부식당, 간부숙소, 다목적강당

1.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재심의 사유

1.5.1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의2

1.5.2 평가준비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

〈표 1.5.2-1〉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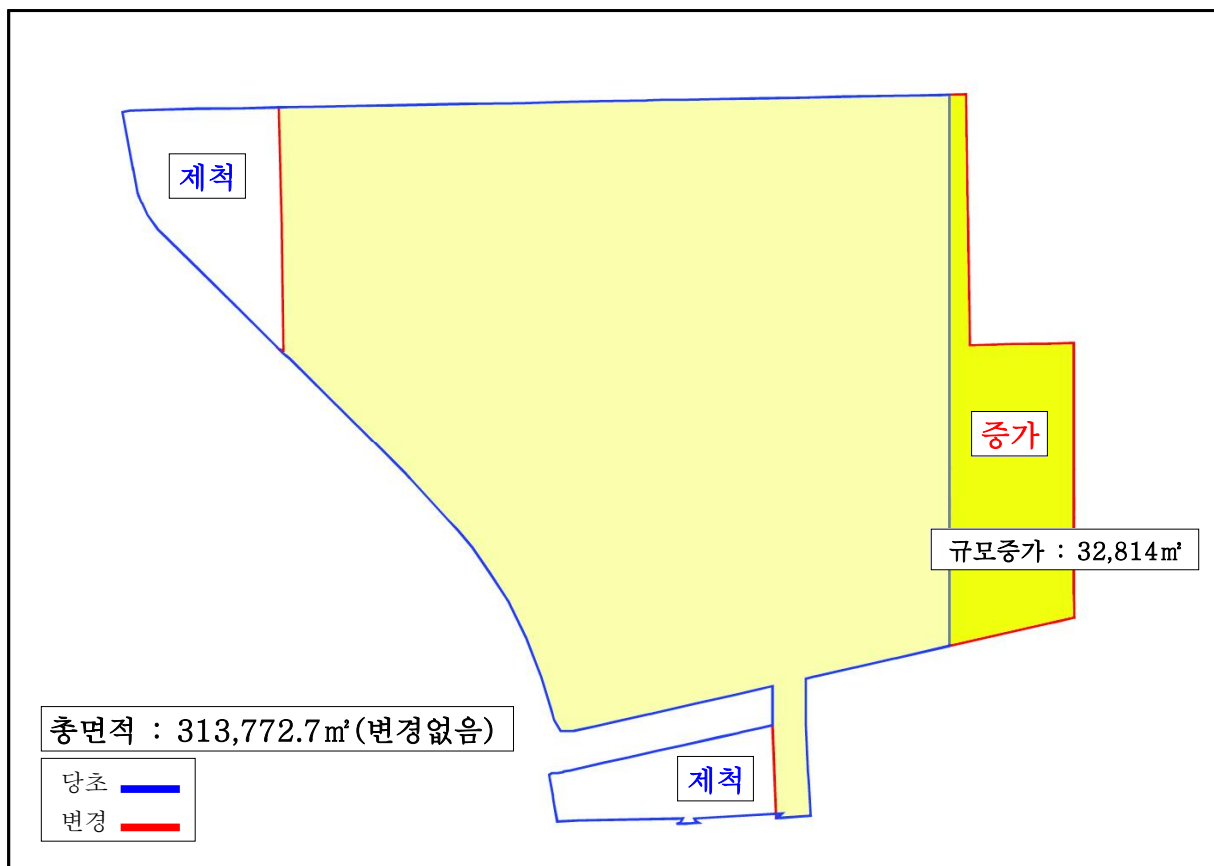
구 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u>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u>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u>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u>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1.5.3 평가협의회의 목적

- 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
-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
- 그 밖에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심의

1.5.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사유

-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시행(2021.12.09.)하였으나, 이후 농지전용 협의 의견 반영에 따라 사업지구 구역계 일부 변경됨
- 구역계 변경 면적은 32,814㎡(약 10.5%)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규모의 증가)에 해당되어,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 예정임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10.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여부” 참조
- 사업계획 변경(구역계 변경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여부를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절차의 재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운영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안내받음
-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지구 구역계 변경이 수반되어,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 결정된 평가범위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를 진행하였음



(그림 1.5.4-1) 사업계획 변경사항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국 방 부

자랑스럽고
귀중한
강군

수신 전주시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및 주민열람 협조 요청(전주대대 이전사업)

1. 평소 귀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 나.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20875호(2024.11.18.), 국방부 고시 제2024-31호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니 제반 법령 및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0875호 관보(20241118) 1부. 끝.

국 방 부 장 관 인



(그림 1.5.4-2) 사업계획(변경) 승인 문서 (1/2)

제20875호

관

보

2024-11-18

●국방부고시 제2024-31호

국방부고시 제2021-26호(2021.5.26.)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전주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주시 북부권 개발 및 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전주대대 이전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 등 119필지 313,772.7㎡
- 변 경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 등 130필지 313,772.7㎡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 초 : 2021년 5월 26일 ~ 2024년 3월 31일
- 변 경 : 2021년 5월 26일 ~ 2027년 10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전주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연 락 처 : 063 - 222 - 1000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덕진구 도도동	29-4	답	713.0	4.0	농림지역		전주시			
2	덕진구 도도동	29-6	답	68.0	68.0	농림지역		전주시			
3	덕진구 도도동	529-5	답	963.1	963.1	농림지역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최**			
4	덕진구 도도동	529-6	답	2,940.2	2,940.2	농림지역	아중현대아파트111-5**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58-2	최**			
5	덕진구 도도동	529-7	답	3,856.3	3,856.3	농림지역	아중현대아파트111-5**				
6	덕진구 도도동	529-8	답	3,920.6	3,920.6	농림지역	김제군 백구면 영상리 *48-1	나**			
7	덕진구 도도동	529-9	답	3,850.5	3,850.5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7, *02동 *04호	지**			
8	덕진구 도도동	529-10	답	2,274.8	2,274.8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청북길 *6(남정동)	조**			한국농어 촌공사
9	덕진구 도도동	529-11	답	1,581.6	1,581.6	농림지역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 촌공사			
9	덕진구	529-11	답	1,581.6	1,581.6	농림지역	광주 서구 쌍촌동 155	백**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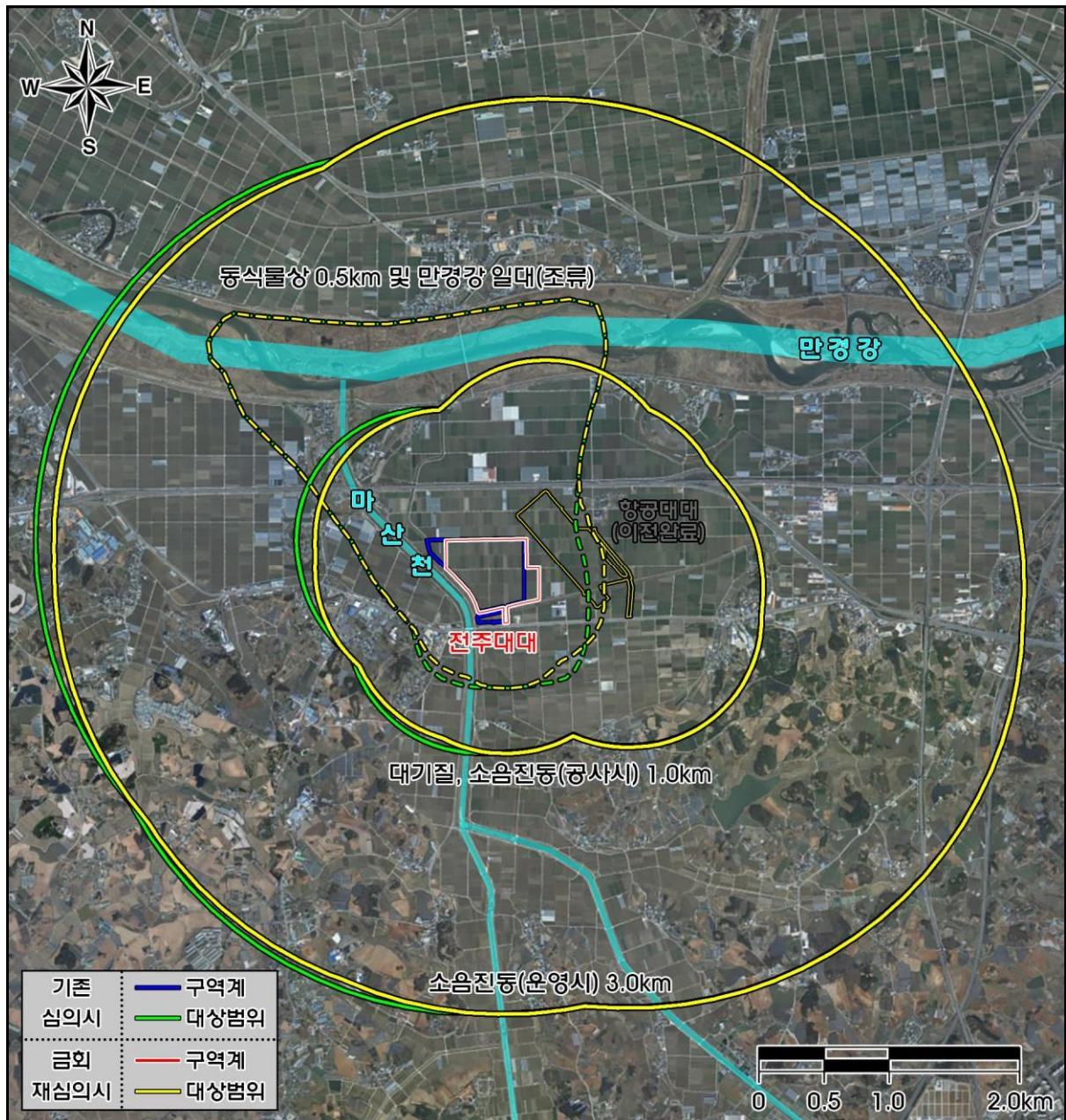
- 사업시행으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 사업시행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2017.12.31, KEI”,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01.01, 환경부”,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21.03, 전주시” 등을 토대로 사업지구 주변 여건 및 환경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객관성 있게 설정하였음

〈표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2)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 지역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동·식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범위 및 만경강 일대(조류)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상	○ 사업지구 인근 기상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 ○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질	○ 사업지구 주변 대기질 현황 조사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취	○ 사업지구 주변 악취유발시설 현황 및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영향예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 사업지구 주변 온실가스 현황 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표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2)

구 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설정사유	평가대상 지역범위	비 고
수환경	수질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부의 오수발생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운영시 발생 오·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 수질오염총량 검토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서 만경강 합류지점	- 공사시 - 운영시
	수리·수문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 수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사업시행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발생되는 지역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토양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지형·지질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예상지역 - 강우시 토사유출 예상지역 - 비옥토 유실 예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 사업지구 주변 소음·진동 현황 조사지점 - 공사시 및 운영시 사업지구 및 항공대대 소음·진동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1.0km 이내, (운영시)3.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위락·경관	- 사업지구 입지로 경관변화 발생 예상 지역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변화 예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전파장해	사업지구 내 전파장해 영향 예상 지역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상	사업지구	운영시



구 분	평가대상 지역 범위	비 고
동·식물상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범위 및 만경강 일대(조류)	기존대비 변경없음
수 질	사업지구 주변에서 만경강 합류지점	기존대비 변경없음
대기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기존대비 변경없음
소음·진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1.0km 이내, (운영시)3.0km 이내	기존대비 변경없음
기타 항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존대비 변경없음

※ 대기질/소음·진동은 항공대대를 고려하여 대상지역범위를 설정하였음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사업계획 변경(구역계 변경)으로 인해 평가항목별 지역범위 설정 기준은 동일하나,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대상범위의 경계선이 일부 조정되었음

-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내용과 동일함

〈표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비교

구 분	항 목	평가대상 지역범위			
		당 초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금 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심의 시)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범위 및 만경강 일대(조류)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범위 및 만경강 일대(조류)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기 환경	기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대기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1.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악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온실가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수환경	수질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서 만경강 합류지점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주변 수계에서 만경강 합류지점	○ 공사시 ○ 운영시
	수리·수문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공사시 ○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토양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지형·지질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1.0km 이내, (운영시)3.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1.0km 이내, (운영시)3.0km 이내	○ 공사시 ○ 운영시
	위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경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전파장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지구	○ 운영시	사업지구	○ 운영시

제3장 토지이용계획안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3.1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3.2 토지이용계획안

제3장 토지이용계획안

3.1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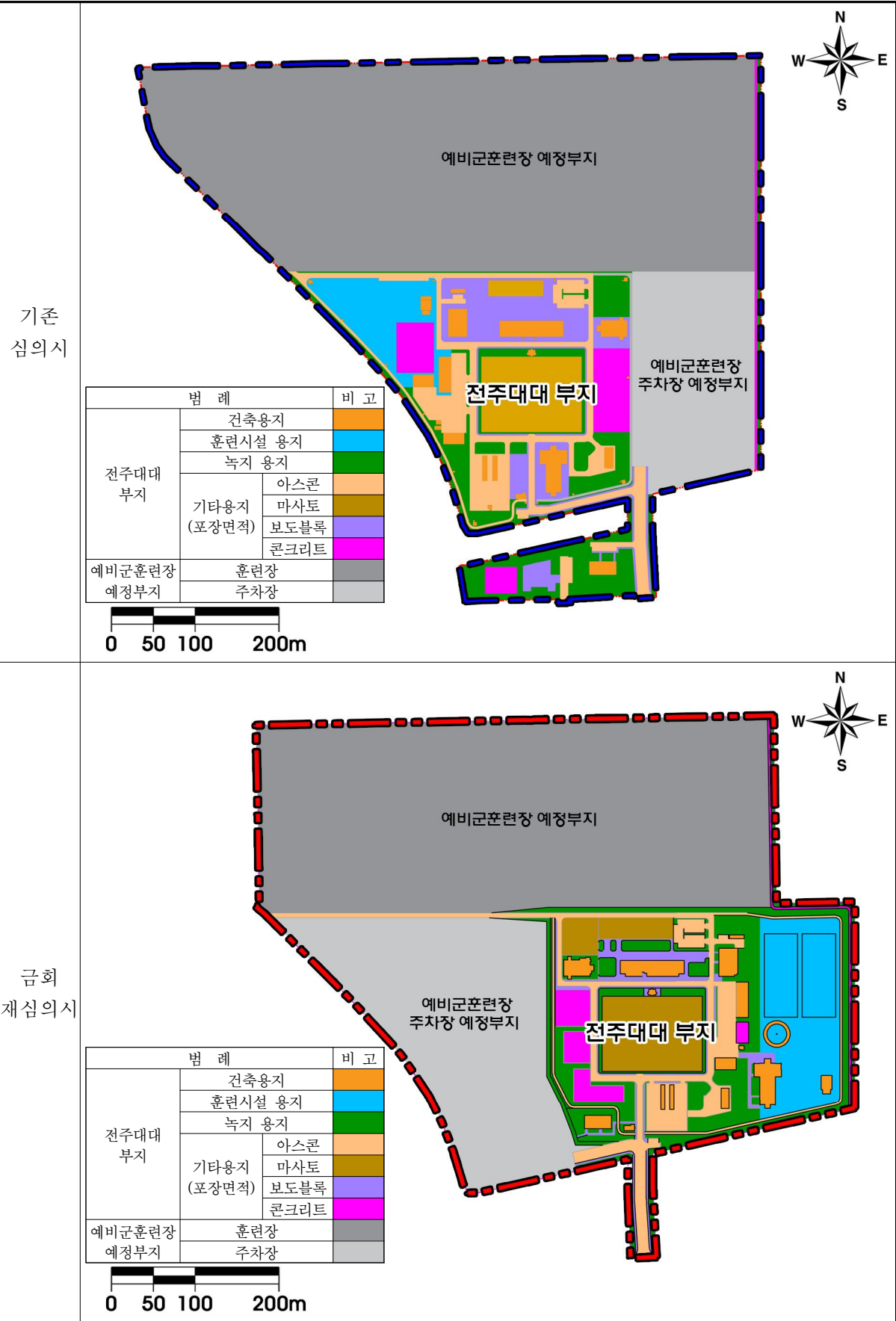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군사시설의 특수성 및 시설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수립
- 군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최적 배치계획 수립
-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시설간의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계획

3.2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지구는 전주대대 부지 및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
- 주요 시설로 통합생활관, 실내방음사격장, 연병장, 훈련장, 녹지 등을 배치하였음
 - 항공대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 현재 운영중으로 이전 예정인 전주대대 토지이용 계획안을 제시함
-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는 부대조성 완료 후 국방부에 이관할 것이며, 예비군훈련장의 세부설시설계는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임

〈표 3.2-1〉 토지이용계획표(안)

구 분		심의시		재심의시		비 고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합 계		313,772.7	100.0	313,772.7	100.0	—
전주대대 부지	소 계	106,332.7	33.9	109,758.9	35.0	—
	건축용지	7,549.0	2.4	6,821.0	2.2	—
	훈련시설 용지	9,988.7	3.2	20,138.2	6.4	—
	녹지 용지	27,795.0	8.9	31,514.5	10.0	—
	기타용지(포장면적)	61,000.0	19.4	51,285.2	16.4	—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	소 계	207,440.0	66.1	204,013.8	65.0	—
	훈련장	170,603.0	54.4	139,396.9	44.4	—
	주차장	36,837.0	11.7	64,616.9	20.6	—



(그림 3.2-1) 토지이용계획도(안)

제4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4.1 환경보전목표 설정

제4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4.1 환경보전목표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에 의거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환경보전목표 설정 시 사업의 성격, 환경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각종 법령에 제시된 환경기준에 준하여 설정함

4.1.1 대기환경분야의 보전목표

- 대기환경분야의 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중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1〉 대기환경분야 보전목표 설정

구 분	설정목표	설정사유	비고
미세먼지 (PM-10)	○ 50 $\mu\text{g}/\text{m}^3$ 이하(연간평균치) ○ 100 $\mu\text{g}/\text{m}^3$ 이하(24시간평균치)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토공사, 에너지사용 등)이 큰 PM-10, PM-2.5, NO ₂ 항목을 설정하였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함	공사 및 운영시
미세먼지 (PM-2.5)	○ 15 $\mu\text{g}/\text{m}^3$ 이하(연간평균치) ○ 35 $\mu\text{g}/\text{m}^3$ 이하(24시간평균치)		
이산화질소 (NO ₂)	○ 0.03ppm 이하(연간평균치) ○ 0.06ppm 이하(24시간평균치) ○ 0.10ppm 이하(1시간평균치)		

4.1.2 수환경분야의 보전목표

- 수환경분야의 보전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 중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4.1-2〉 수환경분야 보전목표 설정

구 분	설정 목표	설정사유	비 고
하천수질	○ SS 25mg/L 이하(다만, 상류의 SS 농도가 25mg/L 이상일 경우, 하류의 SS 농도는 상류보다 10mg/L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중권역 물환경목표기준을 참고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상의 환경기준 하천수질 생활환경기준을 적용	○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수질의 영향	공사시
오수처리시설	○ BOD 및 SS 20mg/L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 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의한 영향	공사시

4.1.3 토지환경분야의 보전목표

- 토지환경분야의 보전목표는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3〉 토지환경분야(토양) 보전목표 설정 (공사시)

구 분	설정목표	설정사유	비고
벤젠	○ 1/1/3mg/kg(1/2/3지역)	○ 폐유저장소 인근 폐유유출에 의한 영향	공사시
톨루엔	○ 20/20/60mg/kg(1/2/3지역)		
에틸벤젠	○ 50/50/340mg/kg(1/2/3지역)		
크실렌	○ 15/15/45mg/kg(1/2/3지역)		
TPH	○ 500/800/2,000mg/kg(1/2/3지역)		

〈표 4.1-4〉 토지환경분야(토양) 보전목표 설정 (운영시)

구 분	설정목표	설정사유	비고
Cd	○ 4/10/60mg/kg(1/2/3지역)	○ 사업지구 내 탄약고, 유류고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운영시
Cu	○ 150/500/2,000mg/kg(1/2/3지역)		
As	○ 25/50/200mg/kg(1/2/3지역)		
Hg	○ 4/10/20mg/kg(1/2/3지역)		
Pb	○ 200/400/700mg/kg(1/2/3지역)		
Cr ⁶⁺	○ 5/15/40mg/kg(1/2/3지역)		
Zn	○ 300/600/2,000mg/kg(1/2/3지역)		
Ni	○ 100/200/500mg/kg(1/2/3지역)		
벤젠	○ 1/1/3mg/kg(1/2/3지역)		
톨루엔	○ 20/20/60mg/kg(1/2/3지역)		
에틸벤젠	○ 50/50/340mg/kg(1/2/3지역)		
크실렌	○ 15/15/45mg/kg(1/2/3지역)		
TPH	○ 500/800/2,000mg/kg(1/2/3지역)		

4.1.4 생활환경분야의 보전목표

- 생활환경분야의 보전목표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진동으로 선정하였고,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주거시설, 축사시설 등에 인근 정온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보전목표 등을 설정하였음

〈표 4.1-5〉 생활환경분야(소음) 보전목표 설정

구 분	설정목표	설정사유	비고
주거시설	○ 65dB(A) - 주간	○ 공사시 장비 등 소음으로 인한 영향	공사시
축사시설	○ 60dB(A) - 주간/야간	○ 공사시 장비 등 소음으로 인한 영향 ○ 운영시 실내방음사격장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	공사 및 운영시
의료시설	○ 60dB(A) - 주간	○ 공사시 장비 등 소음으로 인한 영향	공사시
주거시설, 축사시설 등	○ 61L _{den} ○ 80WECPNL	○ 000 항공대대 헬기 운항에 따른 영향	운영시

〈표 4.1-6〉 생활환경분야(진동) 보전목표 설정

구 분	설정목표	설정사유	비고
주거시설	○ 65dB(V) - 주간	○ 공사시 장비 등 진동으로 인한 영향	공사시
축사시설	○ 57dB(V) - 주간	○ 공사시 장비 등 진동으로 인한 영향	공사시

제5장 대안의 설정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5.1 대안의 설정 및 평가

제5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의 설정 및 평가

5.1.1 대안설정 개요

- 본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대안설정 및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개발계획의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대안은 기 검토된 바, 금회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사업규모 및 토지이용계획, 시기와 순서에 대하여 각 2가지의 종류별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함

〈표 5.1.1-1〉 대안의 종류

환경영향평가 대안	비고
○수단·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규모	선정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선정
○시기와 순서	선정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표 5.1.1-2〉 대안의 설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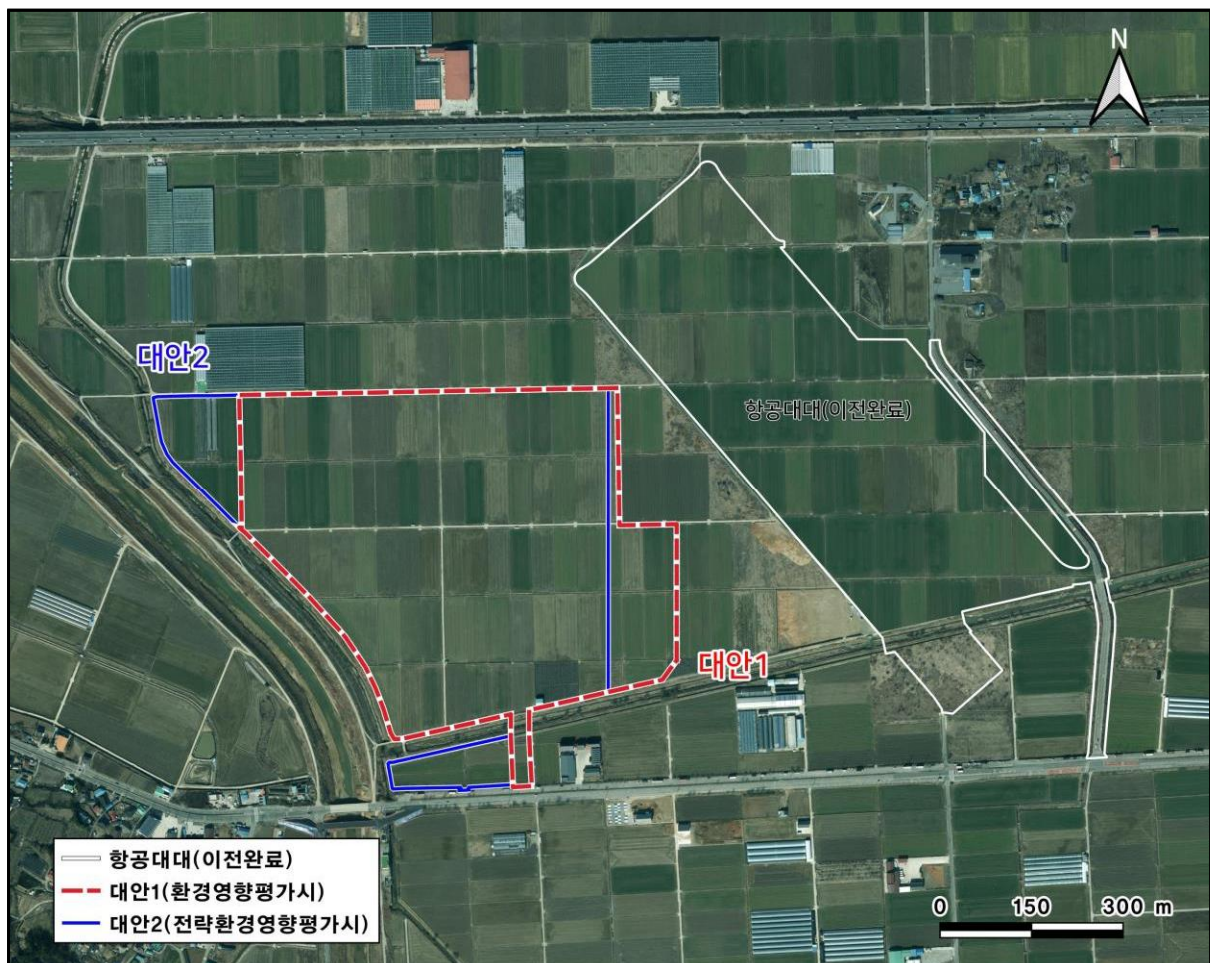
종류	대안설정	선정결과	
사업규모	사업지구 규모 검토	대안1	○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 구역
		대안2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계획지구 구역
토지이용계획	사업지구 내 전주대대 배치 검토	대안1	○ 전주대대 부대시설을 마산천 및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배치
		대안2	○ 전주대대 부대시설을 마산천 및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배치
시기와 순서	사업 시행 시기 검토	대안1	○ 현재 추진
		대안2	○ 장래 추진

5.1.2 대안 비교·검토

가. 사업규모

- 농지전용 협의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경계일부를 조정한 대안1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구 분	대안1	대안2
면 적	313,772.7㎡	313,772.7㎡
사업지구 경계 조정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지구 경계에 대하여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구 경계를 일부 조정함 ○ 농지축 보전 및 사업지구와 항공대대 사이 잔여농지 최소화를 위하여 항공대대 헬기 소음영향 및 비행안전구역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역계를 조정하였음	
선정사유	○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지구 경계를 일부 조정한 대안1 선정 -사업지구와 항공대대 사이 잔여농지 최소화 등	
선 정	◎	



(그림 5.1.2-1) 사업규모 대안(사업지구 구역계 조정)

나. 토지이용계획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쾌적한 병영 환경을 위한 최대 녹지 용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대안1을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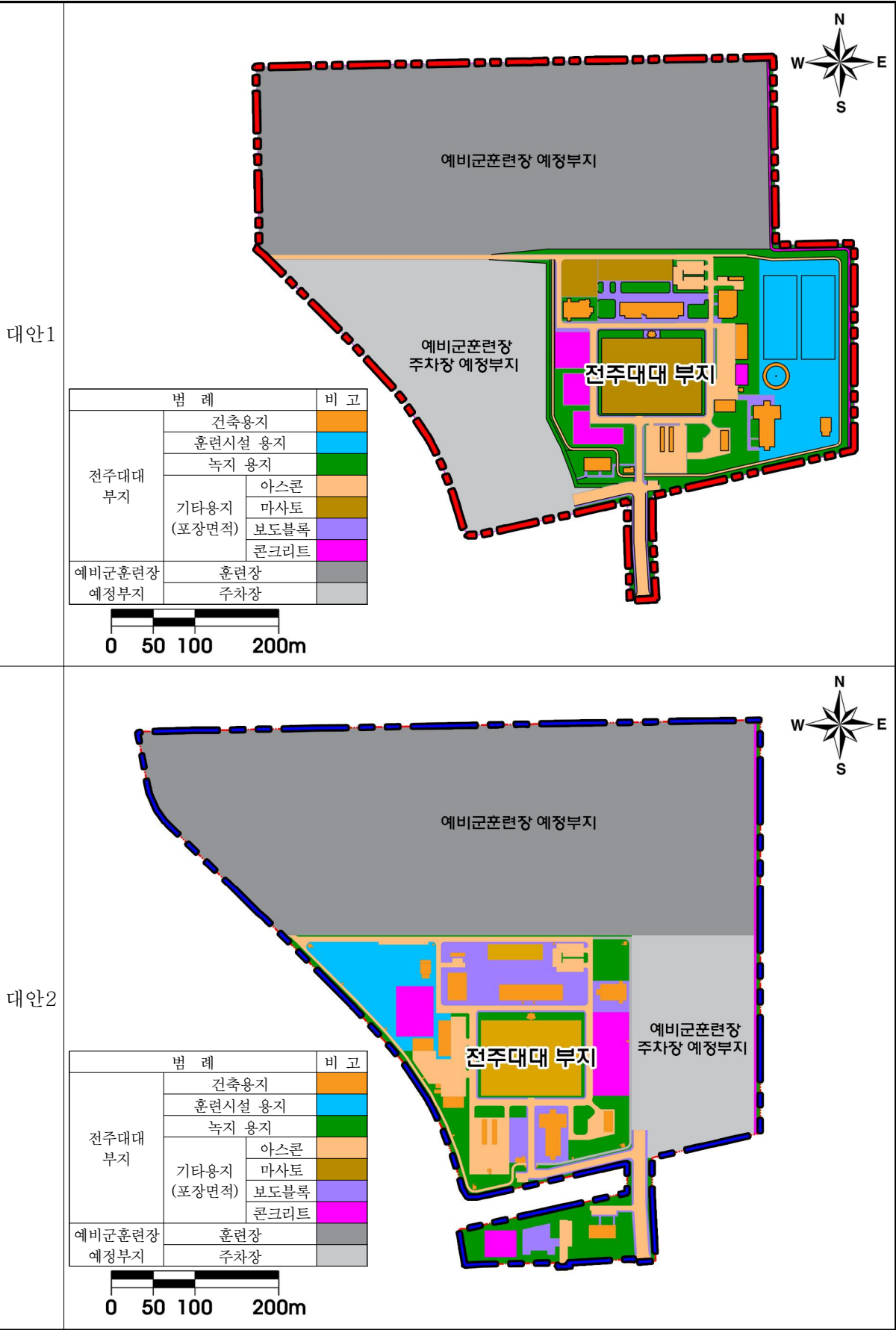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협의 받은 구역계와 금회 환경영향평가지 변경된 구역계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5.1.2-1〉 대안의 설정 및 분석

구 분	대안1	대안2
공 통	○ 군부대를 집약 이전 하여 군작전 수행 능력 등 향상 ○ 본 계획지구는 농림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계획 측면에서 유리 ○ 체계적인 정비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전주 항공대대와 좌측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소음문제 발생 최소화 ○ 탄약고는 전주대대 내부 배치로 주변 민가 피해 최소화	
장·단점	○ 실내사격장을 전주대대 동측에 배치 →주변 정온시설 소음 등 피해 최소화 ○ 야외훈련장, 연병장을 최대한 동측에 배치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녹지 용지 최대 확보로 쾌적한 병영생활 환경 조성 ○ 유동인구가 많은 26번 국도에서 전주대대 (보안시설) 가시 가능성 높음	○ 실내사격장을 전주대대 서측에 배치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 피해 우려 ○ 병영시설(간부숙소) 동측이 외부에 접함 →거주성 저하 ○ 녹지확보 다소 불리 ○ 사업지구 서측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위치 함에 따라 군부대 가시 가능성 증가
선정사유	○ 농림지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농지훼손 최소화 및 사용부대 협의결과 반영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쾌적한 병영 환경을 위한 녹지확보 등을 고려 대안1 선정	
선 정	◎	

〈표 5.1.2-2〉 대안별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대안1(금회)		대안2(기존)		비 고
		면 적(m ²)	구성비(%)	면 적(m ²)	구성비(%)	
합 계		313,772.7	100.0	313,772.7	100.0	—
전주대대 부지	소 계	109,758.9	35.0	106,332.7	33.9	—
	건축용지	6,821.0	2.2	7,549.0	2.4	—
	훈련시설 용지	20,138.2	6.4	9,988.7	3.2	—
	녹지 용지	31,514.5	10.0	27,795.0	8.9	—
	기타용지	51,285.2	16.4	61,000.0	19.4	포장면적
예비군훈련장 예정부지	소 계	204,013.8	65.0	207,440.0	66.1	—
	훈련장	139,396.9	44.4	170,603.0	54.4	—
	주차장	64,616.9	20.6	36,837.0	11.7	—



(그림 5.1.2-2) 대안별 토지이용계획도(안)

다. 시기와 순서

- 해당 사업의 달성 시기 등을 위한 “시기와 순서”에 따른 비교·검토를 위하여 사업 시행 시기에 대하여 2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대안1(현재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표 5.1.2-3〉 시기와 순서 대안의 비교·검토

구 분	대안1 (현재 추진)	대안2 (장래 추진)
개 요	○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	○ 사업계획에 대하여 장래 추진
핵심 방식	○ 지자체 주도의 ‘기부대양여’ 방식(대체 부지 조성 후 기존 부지 확보) 및 특별법 제정	○ 인구 감소 및 국방개혁(부대 통·폐합)에 따른 자연적 유휴 부지 발생 대기
재원 조달	○ 지자체 및 민간(SPC) 선투자 (초기 대규모 재원 소요)	○ 국가 재정 및 장기 국방 예산 편성에 의존
장 점	○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즉시 추진 → 도심발전을 저해했던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해당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신속한 부대이전에 따른 훈련여건 개선 → 도심지 내 군사시설을 조속히 이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훈련 여건 개선 및 시설 활용의 효율성 증대 등 국방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 초기 재원 투입 부담 완화 및 재정 안정성 확보 → 지자체 및 민간의 선투자 부담이 없으며, 단계적 재정 투입을 통해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가능 ○ 장기적 사업 타당성 확보 가능 → 향후 인구 및 도시구조 변화 반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가능
단 점	○ 재무 리스크 → 민간 사업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초기 자금조달 부담과 시장 상황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 존재	○ 지역 발전 저하 → 사업계획 추진 지연에 따른 도심지 경제 활성화 저하 및 지속적 지역민원발생 우려
선정사유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심단절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훈련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대안1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선 정	◎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제6장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설정

6.1 평가항목의 선정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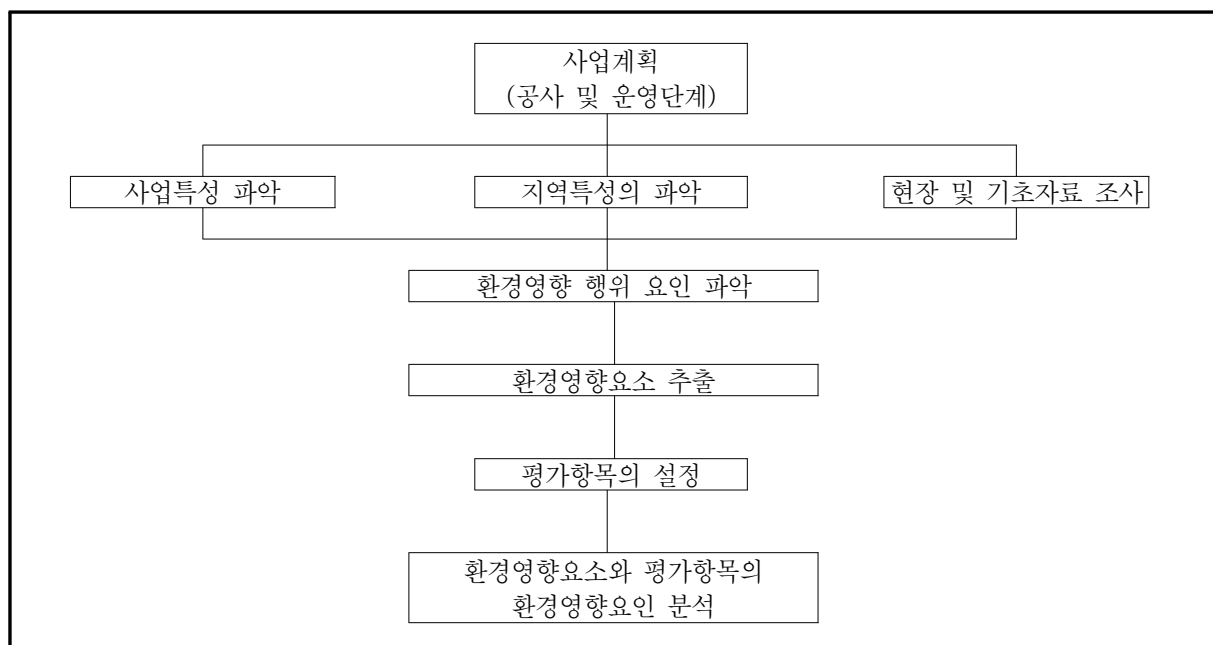
6.3 평가범위 및 방법

제6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6.1 평가항목의 선정

6.1.1 환경영향요소 추출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자연 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6.1.1-1) 환경영향요소 추출흐름도

<표 6.1.1-1> 단계별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공 사 시	운 영 시
환경 영향 요소	○ 지장물철거 ○ 자재운반 ○ 수목의 훼손 ○ 지형의 변화 ○ 절·성토, 다짐, 정지 ○ 공사배수 ○ 포장 ○ 기초공사 ○ 건축물공사 ○ 급배수공사 ○ 공원녹지공사	○ 냉·난방 ○ 오수발생 ○ 폐기물발생 ○ 교통량증대 ○ 항공기 운항 ○ 공원녹지이용 ○ 생활인구증가

6.1.2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사업특성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단계별로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와 평가 항목 간 상호작용관계를 행렬식 대조표로 비교·평가함

〈표 6.1.2-1〉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환경항목 환경영향요소		자연 생태 환경		대기환경				수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동 · 식 물 상	자 연 환 경 자 산	기 상	대 기 질	악 취	온 실 가 스	수 질	수 리 · 수 문	토 지 이 용	토 지 양	지 형 · 지 질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소 음 · 진 동	위 락 · 경 관	전 과 장 해	인 구 · 주 거
공사 단 계	지장물철거	△			△								△	○			
	자재운반	△			△								△	○			
	수목의 훼손	○	○	△													
	지형의 변화	□	□								△	△					
	절·성토, 다짐, 정지	□	□		□			□	□	□	△	△		□			
	공사배수	△						○	○								
	포장				□			□						□			
	기초공사				△							△		△			
	건축물공사		□		△							△		△	□		
	급배수공사				△			□	□			△					
	공원녹지공사		□		△					○					□		
운영 단 계	시설 냉·난방	△			□		□										
	오수발생					□		○									
	폐기물발생					□					△		□				
	교통량증대				○		○							○			
	항공기 운항	□	□		○									○			
	생활인구증가							□					□			□	▲
범례		● : 개발되면 상당히 좋음 ■ :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임 ▲ : 개발되면 긍정적이나 크기는 작음								△ :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함 □ : 악영향이 다소 있음(보통정도) ○ : 악영향이 큼							

6.1.3 평가항목 선정

- 본 사업의 계획 및 지역 특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20개 항목 중 12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고,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4개 항목을 현황조사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개 항목을 미포함 항목으로 선정함
-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내용과 동일하게 금회 재심의 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6.1.3-1〉 평가항목 선정 및 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제외) 사유
		중점	일반	미포함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 식생훼손 정도 및 이식수목 파악, 공사시 육상동물상 변화, 주요 종(법정보호종 및 천연기념물 등) 서식여부 및 보전대책
	자연환경자산	○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 활용(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대기질	○	-	-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 및 이동 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
	악취	-	○	-	○ 주변 악취발생 시설 현황 파악
	온실가스	○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연료사용 및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수 환경	수질	○	-	-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비점오염으로 인한 사업지구 및 인근 수계의 영향 검토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수리·수문	○	-	-	○ 사업지구 내 및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현황조사, 토사 유출 및 홍수위, 홍수량 검토를 통해 재해안전성 검토
	해양환경	-	-	○	○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 미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토양	○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 오염 발생 ○ 운영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 운영시 교통소음 및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위락·경관	○	-	-	○ 절·성토 및 구조물 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 군사·국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생·공중보건상 영향 미미
	전파장해	-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전파장해 유발 시설물 검토
	일조장해	-	-	○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 영향 미미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상
	산업	-	-	○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 영향 미미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6.2.1 조사목적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질 조사는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6.2.2 조사계획

가. 조사지점

- 환경질 조사 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지구의 주변 환경 등 영향 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나.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이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항목

〈표 6.2.2-1〉 환경현황조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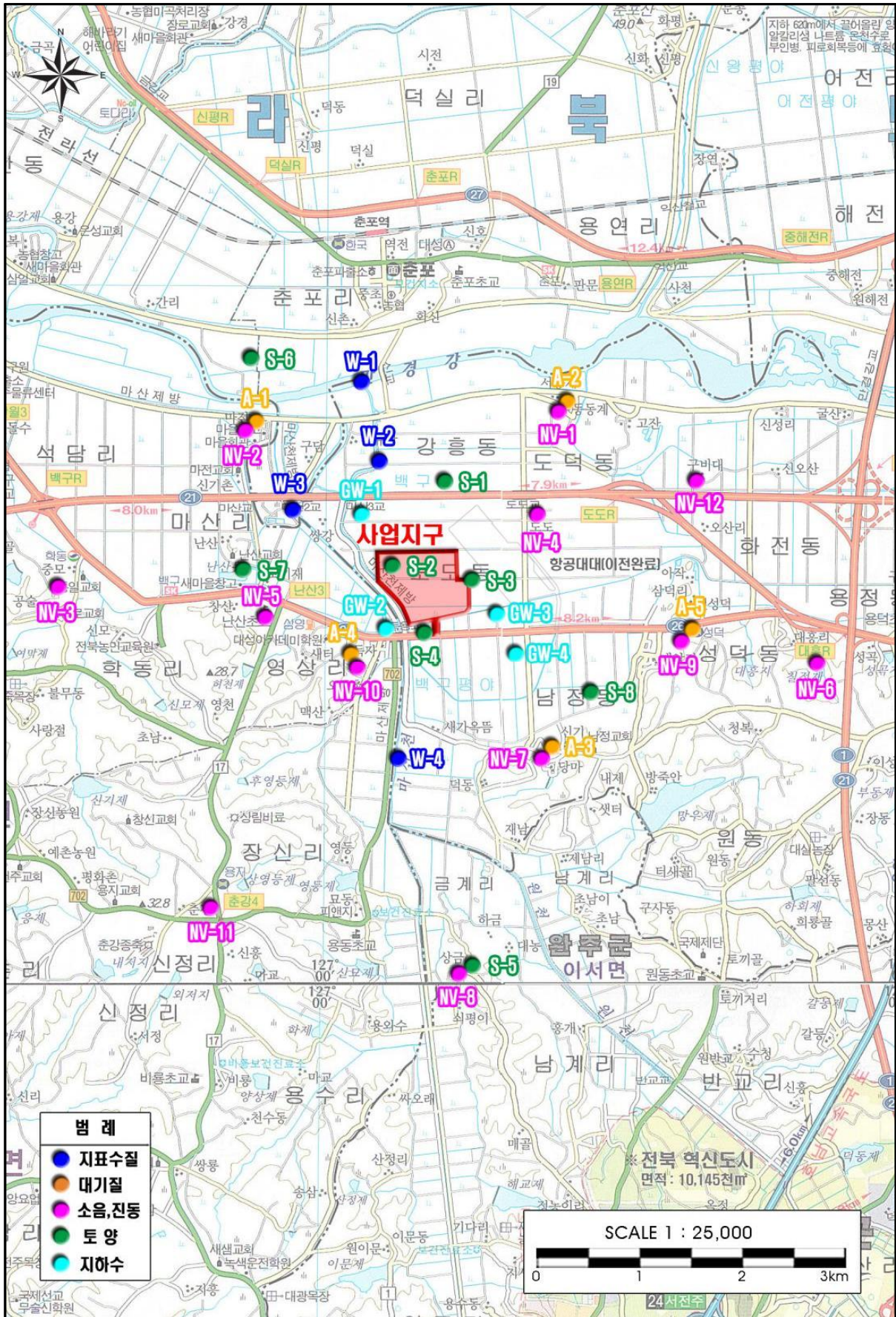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지점수	조사 횟수	비 고
대기질	○ SO ₂ , CO, NO ₂ , PM-10, PM-2.5, O ₃ , Pb, 벤젠 (8개 항목)	5	1	3일 연속
지표수질	○ pH, DO, BOD, COD, SS, CN, As, Hg, 유기인, PCB, T-P, PCE, Cr ⁶⁺ , Cd, Pb, T-N, AB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TOC, 유량 (21개 항목)	4	1	—
지하수질	○ pH, CN, 페놀, As, Hg, TCE, PCE, Cr ⁶⁺ , Cd, Pb, Zn, Cl ⁻ , NO ₃ -N,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9개 항목)	3	1	—
토 양	○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화합물,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19개 항목)	8	1	—
소음·진동	○ 주간 소음·진동, 야간 소음·진동	12	1	—
	○ 항공기 소음	11	1	—

주) 환경현황조사 항목 중 항공기 소음은 본 사업 당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진행 중 조사 완료하였음(2023.04.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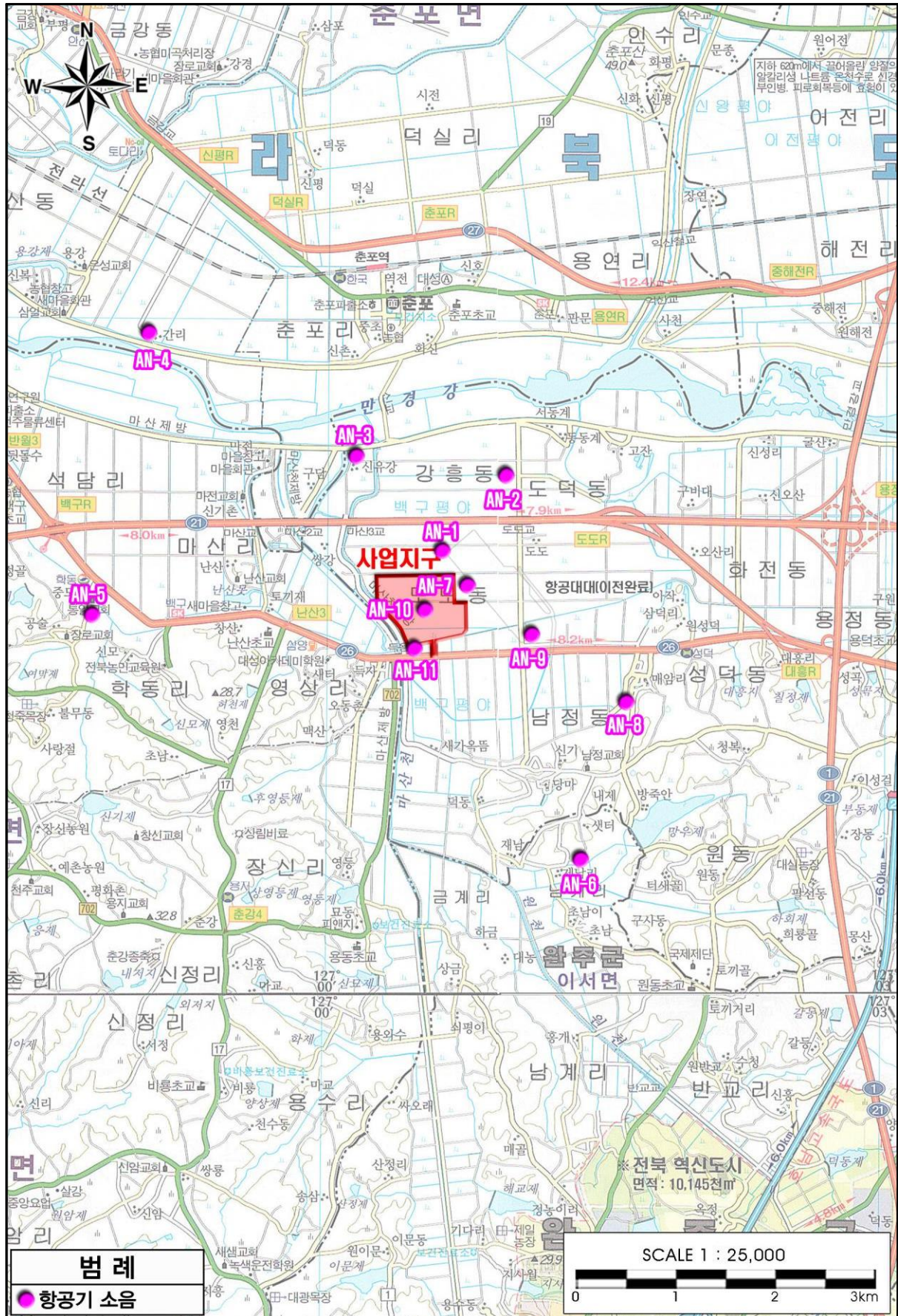
2) 조사지점

〈표 6.2.2-2〉 환경현황 조사지점

구 분	위 치	비 고
대기질	A-1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9-2	주 택
	A-2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124-10	도덕보건진료소
	A-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348-4	축 사
	A-4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66-1	주 택
	A-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491-1	상업시설
지표수질	W-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14-3 인근	만경강
	W-2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132-37 인근(소교량 아래)	농수로
	W-3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373-2	마산2교
	W-4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900-1 인근	마산천
지하수질	GW-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쌍철길 106-11	생활용수
	GW-2 전북 김제시 백구면 변영로 2919	생활용수
	GW-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622-7	생활용수
토양	S-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강길 109-80	답
	S-2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29-3	답
	S-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30-14	답
	S-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80-2	답
	S-5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494	전
	S-6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92-1 인근	잡종지
	S-7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323-19	임야
	S-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626-11	답
소음·진동	NV-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124-10	일반, “가”
	NV-2 전북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9-2	일반, “다”
	NV-3 전북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62-39	일반, “다”
	NV-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80-3(도도마을회관)	도로변, “다”
	NV-5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343(난산초교)	일반, “가”
	NV-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85-3(철정경로당)	도로변, “가” 및 “나”
	NV-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348-4	일반, “다”
	NV-8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계리 374-1(상금경로당)	일반, “다”
	NV-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491-1	도로변, “다”
	NV-10 전북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66-1	일반, “다”
	NV-11 전북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350-135	도로변, “다”
	NV-12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1184	도로변, “다”
항공기 소음	AN-1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64-26	항공대대 인근
	AN-2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651	사업지구 주변
	AN-3 전주시 덕진구 신유강길 7	사업지구 주변
	AN-4 익산시 석탄동 1047	사업지구 주변
	AN-5 김제시 백구면 공술길 59	사업지구 주변
	AN-6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57	사업지구 주변
	AN-7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30-12	항공대대 인근
	AN-8 전주시 덕진구 원동 618	사업지구 주변
	AN-9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495-4	항공대대 인근
	AN-10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34-1	사업지구 내부
	AN-11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89	사업지구 내부



(그림 6.2.2-1) 환경현황 조사지점도



(그림 6.2.2-2) 환경현황 조사지점도 (항공기 소음)

6.3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는 다음과 같음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당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후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내용과 동일함
- 다만,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대상범위의 경계선이 일부 조정되었음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3회 조사 시행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시 1회 조사 시행할 예정임

〈표 6.3-1〉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1/3)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자연생태 환경	동· 식물상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 습지분포 등 ○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 생물상 현황 - 인접 하천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 500m이내 및 만경강 일대(조류)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육수생물상 - 토사 유출 및 수계의 연속성 단절이나 간섭에 따른 영향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의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 사업지구 경계 500m이내 및 만경강 일대(조류)
	자연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 방안 수립	○ 사업지구 경계 500m이내 및 만경강 일대(조류)
대기 환경	기상	① 조사내용 ○ 최근 기상현황분석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인근 기상대) ③ 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 기상연보 ○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원(면·선·점) 현황파악 ② 조사범위 ○ 직·간접 영향권 : 1.0k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5개 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 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누적 평가 고려) ○ 대기질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방안 수립 ○ AERMOD 등 확산 모델 이용	○ 사업지구 경계 1.0km 이내

〈표 6.3-2〉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2/3)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대기환경	악취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악취 오염원 현황파악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문헌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영향 파악 ○ 악취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방안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운영시 사업지구 내 온실 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 공사시 장비가동 및 운영시 연료사용을 산정 후, IPCC 배출계수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 사업지구
수환경	수질	① 조사내용 ○ 하천 환경기준 설정항목의 현황농도 ○ 주변 지하수 현황 (지하수 수질 기준)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지표수 4개 지점 ○ 지하수 4개 지점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공사 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 부하량 예측 ○ 운영시 급수 및 우·오수 처리 계획	○ 사업지구 ○ 주변수계 (마산천, 만경강 등)
수환경	수리· 수문	① 조사내용 ○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 사업지구 주변지역 주요 수계 유량변화분석 및 대책수립 ○ 운영시 재해(홍수유출량 변화 등) 분석	○ 사업지구 ○ 주변수계 (마산천, 만경강 등)
토지환경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파악	○ 사업지구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 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8개 지점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 운영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	○ 사업지구

〈표 6.3-3〉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3/3)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토지환경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 발생, 사면안정성 등	○ 사업지구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 사업지구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경계 3.0km 이내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소음 : 12지점 ○ 진동 : 12지점 ○ 항공기소음 : 11지점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감쇠식 이용 ○ 운영시 통행차량 및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영향 예측	○ 사업지구 경계 (공사시) 1.0km, (운영시) 3.0km 이내
	위락·경관	① 조사내용 ○ 위락시설 현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선정(근경·중경·원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파장해	① 조사내용 ○ 전파장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전파장해 유발 사례 및 사업의 시행이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 인구 변화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제7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7.1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제7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7.1 약식평가 절차 대상 여부 검토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약식평가절차에 해당하나,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다각적인 환경보전방안 강구 등을 고려하여 정식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표 7-1〉 약식평가 절차 대상여부 검토결과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검토결과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해당 (약 157%)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 해당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3등급 지역임)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 관리지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제8장 심층·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8.1 심층평가 대상여부

8.2 신속평가 대상여부

제8장 심층·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

8.1 심층평가 대상여부

- 금회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2(심층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심층평가의 대상사업)에 의거하여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표 9-1〉 심층평가 대상여부 (1/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해당여부
1. 도시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운하에 관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사항 없음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다만,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해당사항 없음
	2)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공사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 및 원자력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터빈·발전기의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한다)	○ 해당사항 없음

〈표 8-2〉 심층평가 대상여부 (2/2)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해당여부
4. 수자원의 개발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공항 또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상비행장의 신설	○ 해당사항 없음
	2)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해당사항 없음
	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7.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설치공사	○ 해당사항 없음
8.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2)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3)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가)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30\text{만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5\text{만제곱미터}}$	
	나) $\frac{\text{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매립용적}}{330\text{만세제곱미터}} + \frac{\text{지정폐기물 매립용적}}{25\text{만세제곱미터}}$	
	4)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 해당사항 없음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1일 시설규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해당사항 없음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그 처리용량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비료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 해당사항 없음

8.2 신속평가 대상여부

- 금회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4(신속평가의 대상사업)에 의거하여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해당하지 않음

〈표 8-3〉 신속평가 대상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4	해당여부
① 법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해당없음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없음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대상사업	해당없음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해당없음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해당없음
② 법 제52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에 별표 4의3 제1호의 자연환경 영향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해당
2.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생태계 및 지형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이 아닐 것	해당없음
③ 법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평가준비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에 별표 4의3 제2호가목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이용시설이 없을 것	해당없음
2.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에 별표 4의3 제2호나목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해당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및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 법 제27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이미 협의받은 사업지역	해당없음
2.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이하 이 호에서 “신규 편입”이라 한다)하게 된 사업의 그 신규편입 전 승인등을 받은 사업지역	해당없음

제9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9.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의견 수렴

9.2 주민의견 수렴계획

9.3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

제9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9.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국방시설본부(승인기관) 홈페이지(<https://www.dia.mil.kr/>) 및 전주시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

〈표 9.1-1〉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u>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u>
② 승인기관장등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u>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u> 이를 검토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서에 그 내용을 포함</u> 하여야 한다.

9.2 주민의견 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게시판, 현수막 등)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주시 홈페이지(<https://www.jeonju.go.kr/>)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 준수
(제25조 제5항에 따라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 생략할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표 9.2-1〉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u>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u>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u>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u>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u>이 하여야 한다.</u>

9.2.1 공고·공람

가. 신문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나. 공고·공람 사실의 게시

- 사업지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전주시) 정보통신망(<https://www.jeonju.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eiass.go.kr)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일~60일 범위 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는 주관시장·군수·구청장(전주시)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김제시, 익산시,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장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인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계획임

9.2.2 설명회 개최

- 설명회 개최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9.2.3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 사업의 개요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2.4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 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나.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9.2.5 주민의견 재수렴 요건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5조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 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등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의견 재수렴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함

〈표 9.2.5-1〉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9.3 관계기관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관련 관계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의견수렴 기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전주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 승인기관의 장 : 국방부(국방시설본부)
 - 협의기관의 장 : 전북지방환경청
 -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 전라북도
- 의견수렴 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수립 행정기관에 통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0장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 10.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개요
- 10.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 10.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여부

제10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10.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개요

- 사업시행자 : 전주시
- 승인기관 : 국방부
- 사업기간 : 2019.2. ~ 2024.3.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 협의기관 : 환경부 (現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의내용 통보일자 : 2021.04.29.(환경영향평가과-1272)

10.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

구 분	협의내용	반영여부 및 미반영 사유
<사업개요>	○ (계획명)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 ○ (규모) 313,772.7㎡ ○ (계획기간) 2019.2. ~ 2024.3. ○ (계획수립/승인권자) 전주시 / 국방부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I. 총괄	○ 본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에 국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래 세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아울러, 협의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동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협의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해당 사항 없음
II. 세부 협의 내용	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수환경의 보전 ○ (수질오염총량) 동 사업 시행으로 추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비점오염 식감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끝.	○ 동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 협의를 할 계획이며 협의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겠음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일람(전주대대 이전사업)

1. 국유재산환경과-2055(20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협의내용 1부.
2.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

환경부



수신자 국유부장관(국유재산환경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총 1 쪽>

< 사 업 개 요 >

- (계획명)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
- (규모) 313,772.7㎡
- (계획기간) 2019.2. ~ 2024.3.
- (계획수립/승인권자) 전주시 / 국방부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I. 총 괄

- 본 사업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29-4번지 일원에 국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래 세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아울러, 협의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동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우리부와 협의하여야 함

II. 세부 협의내용

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수환경의 보전

- (수질오염총량) 동 사업 시행으로 추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비점오염확산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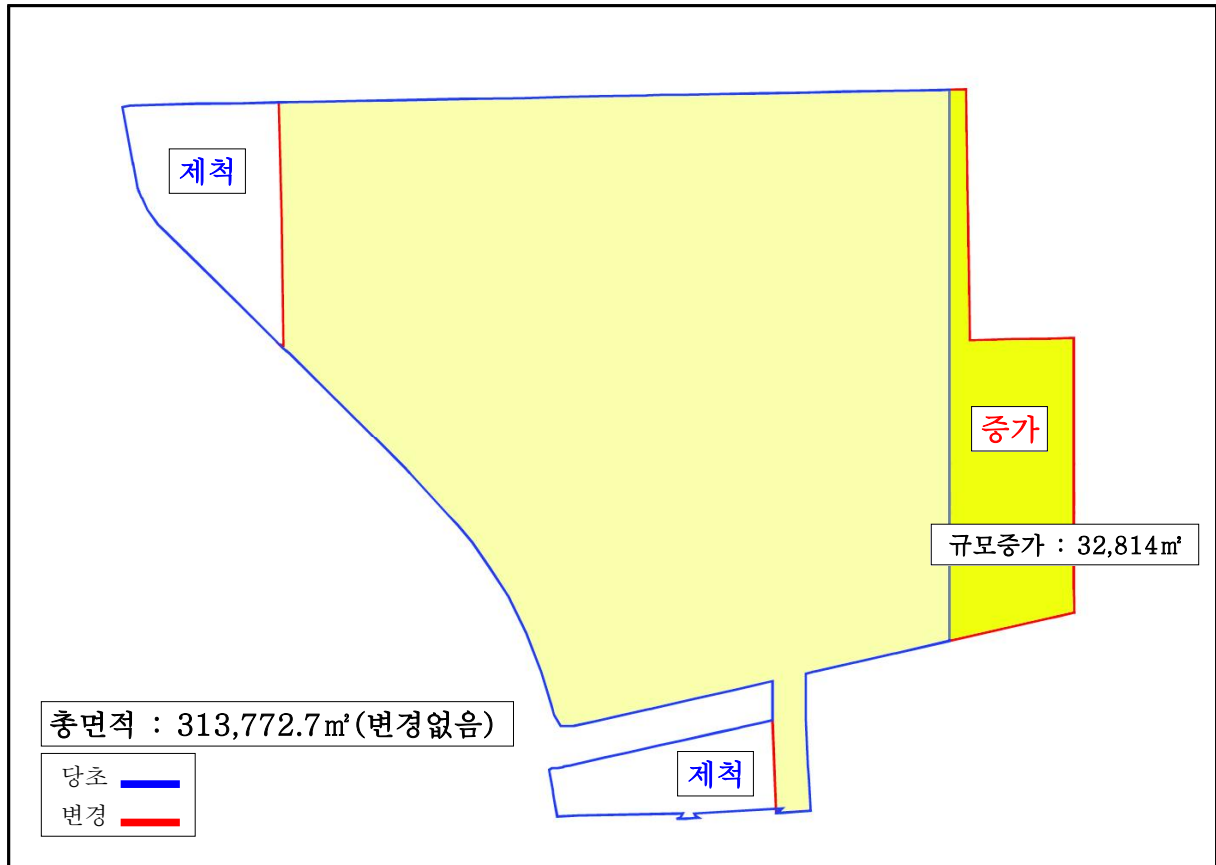
(그림 11.2-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문서

10.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여부

- 본 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비 약 10.5%(32,814㎡)의 규모가 변경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임

<표 10.3-1> 사업계획 변경사항

구 분	사업지구 면적	변 경 사 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적	313,772.7㎡	—	—
환경영향평가 시 변경 면적	313,772.7㎡	규모 증가 32,814㎡(10.5%)	변경협의 대상



(그림 10.3-1) 사업계획 변경사항

가. 재협의 대상여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협의 절차 대상에 해당없는 것으로 검토됨

<표 10.3-2> 재협의 해당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사업지구 해당유무
1. 규모의 증가(30% 이상)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중 원형보전녹지 지역을 10%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는 경우	해당없음

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변경협의 대상여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 변경협의 절차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10.3-3〉 변경협의 해당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사업지구 해당유무
1. 규모의 증가(5%~30%)	해당 (사업지구 규모의 증가 10.5%)
2.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해당없음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별표 2 제2호가목1), 같은 호 마목2) 및 같은 호 사목2)의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해당없음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가 여러 차례 증가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해당없음
5. 원형보전녹지 개발시	해당없음
6.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없음

주)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내용 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 받을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봄
- 따라서, 금회 환경영향평가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을 포함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할 예정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7조,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2. 법 제44조 또는 제46조의2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

제1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재심의)

전 주 대 대 이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항 목 등 의 결 정 내 용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재심의)

제11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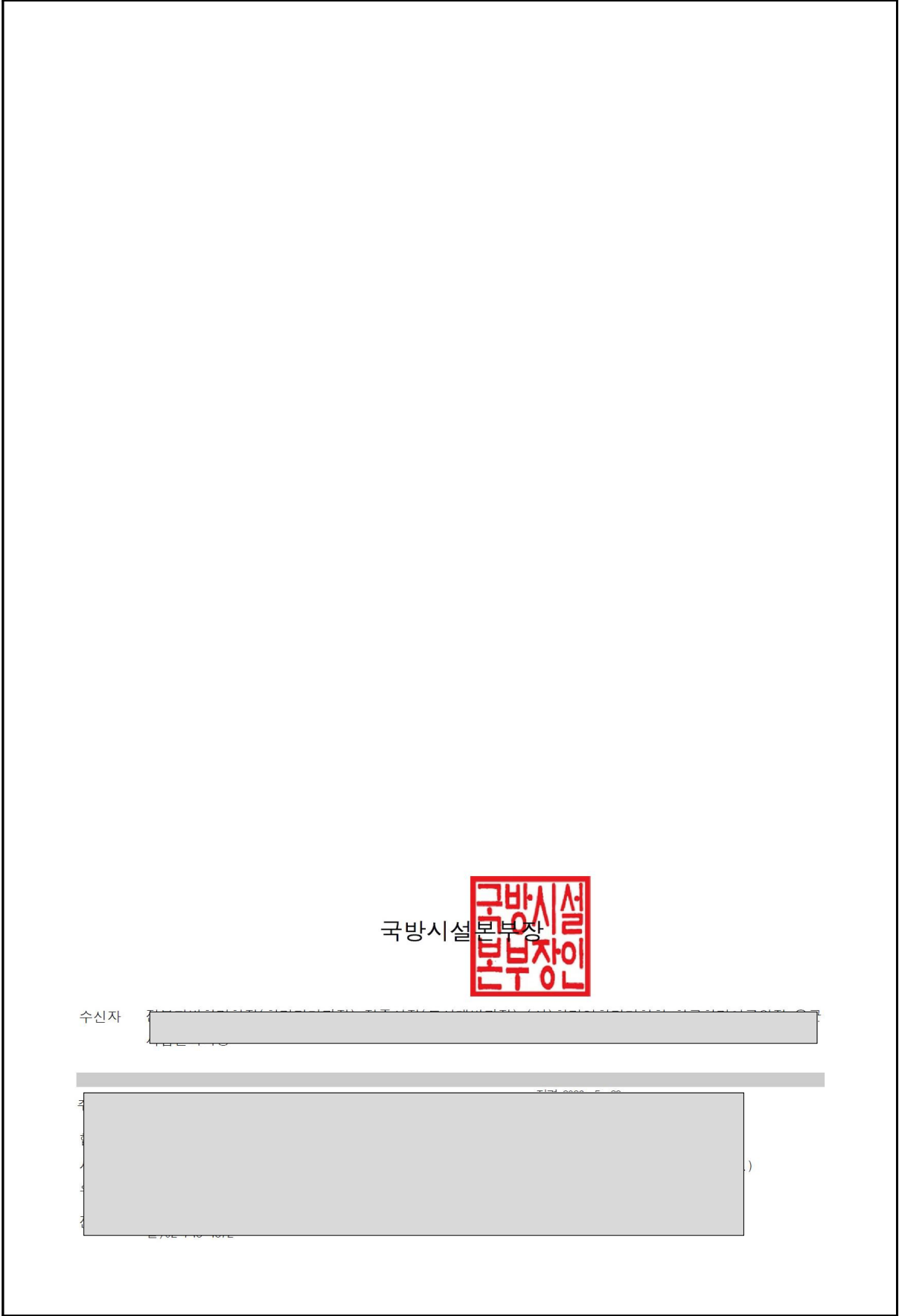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재심의)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심의안건 :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6. 05. 28 ~ 06. 15
- 주 관 : 국방시설본부
- 위 원 : 국방시설본부(승인기관), 전북지방환경청(협의기관), 전주시청(지자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총 8인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구성함

〈표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재구성)

연번	직 책	소 속	성 명	비고
1	위원장	국방시설본부	김○○	승인기관
2	위 원	국방시설본부	오○○	승인기관
3	위 원	전북지방환경청	박○○	협의기관
4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이○○	—
6	위 원	(주)이산	이○○	—
7	위 원	전주시청	조○○	—
8	위 원	전주시 조촌동 주민	주○○	—
9	위 원	시민행동21	김○○	—



(그림 1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알림 (2/2)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국 방 시 설 본 부

국방시설본부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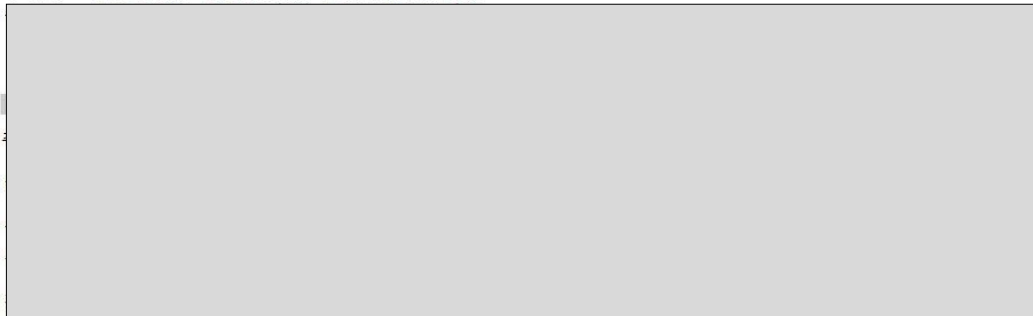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다. 국방시설본부 기준승인과-1509('26.5.29.)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개최 알림
3.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및 심의위원 심의결과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심의위원 확인 서명 등 후속 조치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서 및 심의위원 심의결과 통보서(종합본) 1부. 끝.

국방시설본부장



(그림 1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 ☐ 의제 : ' 26-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전주대대 이전사업)
- ☐ 일시 / 장소 : '26. 6. 19(금) / 국방시설본부 기준승인과
- ☐ 심의의견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조각) 심의 의결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청과 평가대행자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수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19.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국방시설본부

전주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 관 의 건

○ 본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절한 저감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참고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적정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시행 시 친환경적이고 사업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안을 결정하고, 그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공사와 운영시기 구분하여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생태계 등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인근주민들이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출되는 의견에 대하여 적극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이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함)

○ 이견 없음

2026년 6월 11일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전주대대 이전사업)

□ 총관의견

○ 본 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의 전주대대를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에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한 영향권 지역인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시행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 사업노선과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환경오염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평가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

- 사업계획 부지와 인접한 정온시설(인근 지자체(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 포함) 등 미치는 영향 중점검토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항목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 보전방안 대안(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등 2-3개 대안)을 설정한 후 대안별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비교하고, 대안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특성 등)로 구분하여 제시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 중점평가항목 12개, 일반평가항목 4개, 제외항목 4개로 선정

- 중점평가항목 : 동·식물상, 자연환경지식,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지표·지하),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험·경관, 인구·주거

- 일반평가항목 : 기상, 악취, 수리·수문, 전파장해,

- 제외항목 : 해양환경, 위성·공중보관, 일조장해, 산업

○ 조사 범위·지점 : 주변의 환경영향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항목별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현황조사 및 영향 등을 예측

○ 조사·예측·평가 방법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식사항, 근거자료 등을 수록·제시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 활용하되, 문헌자료 상의 측정일사 등을 상세히 표기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제1호(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제1호, '25.10.23. 시행), 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여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

항 목	의 건
동식물상	○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 등 동식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주변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 수립·제시 ○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 조사 횟수를 설정하고 문헌조사 시에는 최근 자료를 활용
대기질, 소음·진동	○ 군부대, 항공대대 운영으로 인한 사격 소음 및 항공기 소음 등으로 인근 정온시설에 대한 생활환경영향을 예상하고, 인근 주거지, 교육시설 등 정온시설 현황을 상세히 조사(이력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 작성, 항공사정 등하여 아래 사항 등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평가 대상 지역의 저감영향권 내 주변 정온시설 현황 및 토지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중점한 수의 조사 지점을 선정·검토·평가하여야 함 ○ 실제 중 점한 영향노선 제시 및 소음 영향권 예측, 확산지역 등 조사지점 및 지점 수 확대 검토 및 인근지역 소음영향 예측 포함 ○ 예비군훈련장 내 사격시설 설치 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중인 실내방음사격장을 예비군훈련장과 통합운영하는 방안 수립·제시 ○ 사격소음 및 항공기 소음 등은 특성상 소음피해 범위가 예측지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하한 상향평가기준을 및 사격소음 최대지 등을 고려하여 소음영향 예측 실시 후 이로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운영 시 소음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주민참여 계획 등) 및 방음대책 수립 ○ 대기질은 기상조건 및 지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기법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선정 ○ 대기질 측정시 계절별 현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사 ○ 공사 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으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 적합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업부지 인근 주거지역의 지역별 이력거리, 거주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지역별 환경영향 예측 결과에 대한 저감방안 등을 수립·제시 ○ 기 협의(항공대대 이전사업)시 제시한 소음·진동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서에 반영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구체적인 저감대책) 작성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다양한 홍보매체(인터넷, 주민센터 게시판, 현수막 등)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내용(기간, 장소 등) 및 의견수렴 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같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06.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위원 직 위 :
성 명 :

(그림 1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2/4)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 의견 ○ 사업지구가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만경강 중류 칠새도래지와 인접하며 주변 정온시설과 수계가 분포하는 입지적 특성을 가진, 따라서 수환경, 칠새 및 조류 서식환경,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 칠새도래지 조사 시 사업지구와 만경강 사이의 조류 이동경로와 소음·야간조명에 따른 잔잔성능 검토 - 녹지용지가 실제 생태완충 기능을 갖도록 폭·위치·수종을 제시 - 법정보호종 또는 주요 서식처가 확인될 경우 공사시기 조정, 완충구역 설정, 야간조명 제한, 저소음 장비 사용 등 회피·저감·대체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 대기질 - 공사차량 이동경로, 토사 반출입량, 공사장비 투입계획, 포장·비포장 구간을 반영하여 PM-10 및 PM-2.5 저감대책을 구체화 - 운임시 차량 이동, 냉난방, 병행시설 에너지 사용, 예비군훈련장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신재생에너지·고효율 설비·녹지흡수원 확보 방안을 검토 ○ 수환경 - 사업지구 주변 수계가 마산천과 만경강으로 연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유역면적, 유출계수 변화, 홍수유출량, 침투유량 변화, 배수구별 방류지점을 명확히 제시	- 공사시 가배수로, 침사지, 오폐수지막, 임시저류지, 사면보호공 등 탁수저감시설의 위치·용량·유지관리계획을 도면과 함께 제시 ○ 토양·토지이용 - 절·성토량, 비옥도 보전 및 재활용 계획, 연약지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지구 경계 조정으로 잔여농지가 최소화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배수단절·농로 단절·경작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 기반시설 연결성을 검토 ○ 소음 - 주변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값, 기존 초과 여부, 방음벽·가설방음판넬·작업시간 제한 등 저감대책을 직접별로 제시 - 운영시에는 전주대대 이전에 따른 차량통행, 예비군훈련장 이용, 사격장 운영 등 주요 소음원을 반영하여 누적소음 영향을 예측 - 훈련시설 운영 특성상 특정 시간대 또는 훈련 집중시기에 소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시 평균 조건뿐 아니라 최대 이용 조건을 반영한 보완 평가가 필요 - 실내방음사격장은 방음성능, 환기설비, 야간·주말 운영 여부를 반영하여 외부 전달소음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 경관 - 군사시설 특성상 경관 차폐가 필요하므로 인접 마을, 학교·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적절히 조망할, 선경 - 녹지계획은 단순 면적 확보가 아니라 차폐녹지, 완충녹지, 생태연결, 미세면적 저감 기능을 고려하여 다층식 및 유지관리계획을 포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의견 미반영 사항은 단순 미반영으로 처리하지 말고, 기술적·법적·사업계획상 사유와 대안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2026년 6월 일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전주시 도도동 29-4번지 일원에 전주대대 이전사업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과의 관련성, 본 사업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며, 평가 대상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접 정온시설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바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 설정은 “사업규조”, “토지이용계획”, “시기와 순서”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전주대대 부대시설을 마산천 및 주거지역과 이격하여 배치하는 등 적정하게 선정되었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본 사업 전라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B’유역 수질오염총량 할당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함 ○ 현황조사의 경우 전라환경영향평가 3회와 급복 환경영향평가서 1회 시행은 적정해 보이며, 현황조사는 계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시기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는 대부분 농경지로 사용되었으며, 사업지구 우측 마산천 및 구거에서 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확인된 맹종이(탐문) 법정보호종에 대해 출현시기를 고려하여 조사 실시가 필요하며 출현시 적정 저감대책(포획·이주 등)이 필요함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가 기존 WECPNL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가중등가소음도[Ldend(A)]로 시행중인 바, 23년 기 시행한 항공기 소음측정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A)]로 제시가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등에 대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자·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예비군훈련장 내 시설은 향후 국방부에서 별도로 수립 및 조성 계획인 바, 해당 예비군훈련장 내 시설 결정 시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 요소 등을 고려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임 2026년 6월 10일 심의위원

(그림 1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3/4)

(그림 12-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4/4)